

제419회 임시회

'24. 7. 15.(월)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3. 제안사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청년 위원 정의 신설(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3항)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0% 의무 위촉하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제외 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경우 청년위원 30% 이상 위촉

-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안 제8조제9항)
-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 신설(안 제8조제10항)
-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 5. 검토의견

### 가. 제출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sup>1)</sup>에 근거하여 2024년 1월에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관련 조례, 지침, 내부규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광역지방자치단체) >

|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
|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 - 위원 추천 다양화 및 검증절차 강화                                 |    |
|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     | -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br>- 청년 등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br>- 지역인재 참여 확대 |    |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인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내부나 민간단체 위주의 위원 추천은 협소한 인재풀, 정실주의로 인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위원이 추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공개모집 추진을 권고한 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는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8조제8항은 청년위원 의무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청년세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가 주로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로 한정되어 의사표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함.
  
- 안 제8조제9항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은, 각종 위원회에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우선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타당함.

○ 안 제8조제10항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를 신설함.

-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치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18조제2항은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현황 공개는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다만, 공개내용, 공개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위원회별로 공개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형식적 공개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위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